예 산 총 칙

201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합 계 | 405,571,740 | 12,167,152 |
| 일반회계 | | 367,674,146 | 11,030,224 |
| 특별회계 | | 37,897,594 | 1,136,928 |
| | 기타특별회계 | 37,897,594 | 1,136,928 |
| 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32,326,160 | 969,785 |
| |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| 248,549 | 7,456 |
| 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| 561,469 | 16,844 |
| | 의료보호비특별회계 | 1,306,199 | 39,186 |
| | 복지기금특별회계 | 622,168 | 18,665 |
| |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| 79,058 | 2,372 |
| | 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 | 2,753,867 | 82,616 |
| | 완도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| 124 | 4 |

- 제 2조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" 과 같다.
- 제 3 조 201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 와 같다.
- 제 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287,578천원으로 한다.
-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,969,000천원으로 한다.
-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호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